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3 - 28호

방배 삼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사항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-33호(2012.02.09.)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-226호(2017.06.29.)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사항) 결정, 서초구 고시 제2019-42호(2019.02.28.)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사항) 결정, 서초구 고시 제2019-42호(2019.02.28.)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사항) 결정, 서초구 고시 제2022-61호(2022.03.17.)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사항) 결정된 서초구 방배동1018-1번지 일대 방배 삼익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사항)을 결정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3년 02월 16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

- 1.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(변경) 결정
- 1. 정비구역 지정 조서(변경없음)

구분	정비사업 명칭	위치	-)	비고	
ㅜ군	경비사립 경상	귀시	기정	변경	변경후	미끄
기정	방배 삼익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	서초구 방배동 1018-1번지 외 1필지	29,470.2	-	29,470.2	서고 제2012-33호 (2012.02.09.)

2. 토지이용계획(변경없음)

7 8	nd 51		면적(m²)	ы О (n/)	비고		
구분	명칭	기정	변경	변경후	비 율 (%)	-17	
합	계	29,470.2	-	29,470.2	100.0	-	
24.01-2101-114	소계	3,678.0	-	3,678.0	12.5	-	
정비기반시설 등	도로	2,794.0	-	2,794.0	9.5	-	
0	공공청사	884.0	-	884.0	3.0	획지2	
공동주택용지	소계	25,792.2	-	25,792.2	87.5	-	
887487	획지1	25,792.2	-	25,792.2	87.5	-	

3. 용도지역 결정 조서(변경없음)

구분		면적(m²)	비율(%)	비고		
下 正	기정	변경	변경후	미뀰(%)	미ᅶ	
계	29,470.2	-	29,470.2	100.0	-	
제3종일반주거지역	29,470.2	-	29,470.2	100.0	-	

4.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(변경없음)

가. 도로(변경없음)

		규	모			연장			사용	최초	
구분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기능	(m)	기점	종 점	형태	^{최조} 결정일	비고
기정	중로	3	Α	12	국지 도로	209.0	방배동 1036-5	방배동 992-6	일반 도로	1984. 09.25	대상지 북측
기정	중로	3	1	12 ~14	국지 도로	257.7	방배동 1036-5	방배동 1036-4	일반 도로	1984. 09.25	대상지 동측
기정	소로	1	В	10	국지 도로	250.0	방배동 1036-5	방배동 1036-5	일반 도로	1984. 09.25	대상지 서측
기정	소로	3	С	6	국지 도로	115.2	방배동 1036-4	방배동 1036-4	일반 도로	1984. 09.25	대상지 남측

나. 공공청사(변경없음)

7 H	, I A-III	11401 3 3	01=1		면적(m²)		31 - 7701	ul ¬	
구문	구분 시설명 시설의		위치	기정	변경	변경후	최초결정일	비고	
기정	공공청사	기타 공공 업무시설	방배동 1018-1	884.0	-	884.0	서고 제2017-226호 (2017.06.29.)	-	

- ※ 공공청사 부지 조성 및 건축물 기부채납 계획
- ※ 공공청사 연면적 1,692.0㎡(환산면적 242.8㎡)

(상기 내용은 최초결정일(2017,06.29., 서고 제2017-226호)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, 정비계획 결정 이후 「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」에 따라 부지면적 환산을 위한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은 건축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충족여부를 최종 확인)

5.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(변경)

구분	시설의 종류	위치		면적(m²)		비고
12	112-1 6TT	TICI	기정	변경	변경후	-1 <u>-</u>
	소계		332,81	감) 1.93	330,88	-
부대 시설	관리사무소		212.48	감) 2.50	209.98	10㎡+[0.05㎡×(707세대-50세대)] = 42.85㎡
	경비실		120,33	증) 0.57	120,90	-
	소계	획지1	5,485.99	증) 160.40	5,646.39	100~1,000세대 미만 : 707세대×2,5㎡×1,25 = 2,209,38㎡
	보육시설		657.46	-	657.46	서초구 기준 500세대 이상 : {120명+[(707세대-500세대)x0,08명]} ×4,29㎡ = 585,84㎡
주민	다함께 <u>돌봄</u> 센터		ı	증) 169.90	169.90	500세대 이상인 경우 설치 (전용면적 66㎡ 이상)
 	경로당		236.07	감) 1.71	234.36	500세대 이상 1,000세대 미만 = 225,00㎡
	작은도서관		216.00	감) 3.47	212,53	500세대 이상 1,000세대 미만 = 158.00㎡
	주민편의시설		3,115.94	감) 4.32	3,111.62	-
	주민 운동 시설		153,77	-	153,77	-
	어린이 놀 이터		957.60	-	957.60	-
	영유아놀이터		149.15	-	149.15	-

※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및「서울특별시 주택조례」주민공동시설 총량기준 이상 확보

- 주민공동시설 총량기준 : (100~1,000세대 미만) 707세대×2,5㎡×1.25 = 2,209.38㎡

- 주민공동시설 설치계획 면적 : 5,646.39㎡

6. 기존 건축물의 정비 개량 계획(변경없음)

구분	구 역 구 분		가구 또는 획지 구분		0171	정비개량계획(동)					비고
	명칭	면적(m²)	명칭	면적(m²)	위치	계	존치	개수	철거후 신축	철거 이주	
기정	방배 삼익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	29,470.2	-	-	방배동 1018-1번지 일대	5	-	-	5	-	1

7. 건축시설계획(변경)

가.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(변경)

구분	구 역 -	구 분		구 또는 시 구분	위치	주되 용도	건폐율	용적	ქ <u>률</u> (%)	높이(m) /최고	비고	
干正	명칭	면적(m²)	명칭	면적(m²)	Ħ/I	구인 공도	(%)	정비 계획	법정 상한	/최고 층수	미포	
기정	방배		획지1	25,792.2	· 방배동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	25.05 이하	250.0 이하	294.45 이하	80.5이하 / 최고 28층이하	-	
변경	삼익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	29,470.2	획지1	25,792.2	1010_1H	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	25.2 이하	250.0 이하	294.45 이하	80.5이하 / 최고 28층이하	건폐율 변경 (증 0.15%)	
기정			획지2	884.0		공공 청사	50.0 이하	250.0 이하	-	3층이하	-	
				주택공급계획 : 707세대 전체 건립규모(전용면적 기준)								
				건립규.	모	합계	건립세대	대(세대) ·양	임대	- 비-	율(%)	
		합계			707	621		86	1	00.0		
		주택의 규모 및 이하 60)m²이하	212	12	26	86	3	80.0		
기정				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		5L 60)㎡초과 5㎡이하	344	34	14	-	4
	ㅠㅗㅋ 건	2 7 2		85㎡초	과	151	15	51	-	2	21.4	
			 전용85㎡ 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: 78.6%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% 이상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% 이상 : 해당없음 소형주택(전용60㎡이하) 건설 : 초과 용적률의 50% 이상 기정 86세대(연면적 5,735.3㎡) → 변경 86세대(연면적 5,740.5㎡, 중 5.2㎡) 세대수 변경 없음,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연면적 증가 									
기정	심의완회	사항			에 따른 성 적률 294.	당한용적률 완 45%	화(도시	및 주거	환경정비법	네 제54조)		
기정	건축물의 관한		• 획지	·l경계선으	로 부터 건	!축한계선 3m	n					
기정	대지내 - 관한 :	•	- - - - - -	공공보행통 계획 단차가 없		방향 도로(명달 칙으로 하며,		-			_ •	

■ 변경사유(건폐율)

구분	위치	변경내용	변경사유
건폐율	방배동 1018-1번지 일대 (획지1)	∘ 건폐율 증가(증 0.15%) - 기정 25.05% → 변경 25.2%	 건축 인허가시 협의의견(장애인 통행로 확폭 등) 반영에 따른 건폐율 증가

■ 용적률 계획(변경없음)

구분			산정내용							
		새로	설치하는 기반시설	면적	7707					
면정(m²)	구역면적	도로	공공	-청사	국공 유지 면적					
면적(m²)			토지	건축물	27					
	29,470.2	2,794.0	884.0	242.8	-					
	· 신설 정비기반/	신설 정비기반시설 -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								
순부담	$= 2,794.0 \mathrm{m}^2 + 884.0 \mathrm{m}^2 + 242.8 \mathrm{m}^2 - 0 \mathrm{m}^2 = 3,920.8 \mathrm{m}^2$									
	• 순부담 면적 3	,920.8㎡, 순부담률	물 13.3%							
	∘ 기준(허용)용적률 210%이하, 상한용적률 250.0% 이하									
	상한용적률 =	허용(기준)용적률	\times (1+1.3 α)							
상한 용 적률	= 210% ×	$(1 + 1.3 \times 0.153)$	35) = 251.9%이허	ŀ						
00072	* α = -	공공시설부지 제공단	면적 ÷ <mark>공공</mark> 시설부	지 제공 후 대지면	적					
	= 3,920.8 m ²	$= 3,920.8 \mathrm{m}^2 \div (29,470.2 \mathrm{m}^2 - 3,920.8 \mathrm{m}^2) = 0.1535$								
	· 개발가능용적률은 251.9%임에도 불구하고 상한용적률 250.0% 적용									
법적상한 용적률	∘ 294.45% ০ ৳	+								

■ 공공청사 설치에 관한 계획(건축물 기부채납)(변경없음)

구 분	내 용	비고
① 공시지가(원/m²)	8,580,000	2016년 공시지가
② 표준건축비(원/㎡)	2,462,000	서울시 공공건축물 등 공사비 책정 등 가이드라인
③ 공공청사 건축물 연면적(㎡)	1,692.0	-
④ 설치비용(원)	4,165,704,000	2×3
⑤ 부지가액(원/m²)	17,160,000	공시지가 2배 적용
⑥ 건축물 환산 부지면적(m²)	242.8	4÷5
⑦ 공공청사 부지면적(m²)	884.0	-
기부채납 토지(환산) 면적(m²)	1,126.8	6 +⑦

- ※ 상기내용은 공공시설 확보비율 및 순부담 기준의 충족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계획의 입안단계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
- ※ 향후 「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(서울시)」에 따라
- 부지면적 환산을 위한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은 건축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
- 계획수립 시 공공시설 확보비율, 순부담 기준의 충족여부는 계획의 입안단계에서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을 예측하여 검토하고 계획결정 이후 건축허가 시 충족 여부를 최종 확인
- ※ 공공청사의 주차장은 지상에 설치하도록 함

■ 법적상한용적률에 따른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(변경)

계획기	준(변경없-	음)	정비계획으	 「도시정비법」및「서울시 도시정비조례」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% 이상 계획 소형주택은 공공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로 사용 					
법적상한-	법적상한용적률(변경없음)			니하					
상한용적률(변경없음)			∘ 250.0% oli	하					
1	용적률 증가분			250.0% = 44	1.45%				
소형주택 의무면적 (변경없음) 용적률의		-	· 44.45% × 0.5 = 22.23%						
(의무	연면적	∘ 22.23% × 25,792.2㎡(공동주택용지 면적) = 5,733.6㎡						
			전용면적	공급면적	세대수	연면적	비고		
		기정	44,98 m²	66,69m²	86	5,735.3 m²	획지1		
ᆺᆏᄌ	FH		합	계	86	5,735.3 m²	> 5,733.6 m²		
소형주택 확보계획			전용면적	공급면적	세대수	연면적	비고		
			44.94 m²	66.75m²	86	5,740.5 m²	획지1		
		변경	힙	계	86	5,740.5㎡ (중 5.2㎡)	> 5,733.6 m²		

8. 환경보전,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및 환경성 검토 결과(변경없음)

가.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(변경없음)

구 분	계 획 내 용	비고
도시 경관	• 경관 Simulation을 통하여 주변지역에 대한 조화로운 경관 형성 유도	-
환경 보전	• 자연지반녹지, 틈새투수포장, 인공지반녹지 등으로 환경친화적 계획수립	-
재난 방지	 차량동선과 보행동선을 분리하여 차량과 보행자의 상충 최소화 여유있는 피난시설과 방화구획 계획으로 화재 등 재난에 의한 피해방지 건설소음 가설방음판넬 설치하여 정온한 환경유지 장비의 동시 투입 지양 및 공종별 분산 투입, 저소음 건설장비 사용으로 소음영향을 최소화 	-

나. 환경성검토 결과(변경없음)

Ⅱ.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내용 중 '환경관리계획'참고

9. 정비사업 시행계획(변경없음)

구분	시행방법	시행예정시기	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		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			
				기존	계획	증		
기정	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	구역(변경)지정 후 4년 이내	방배 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	408	707	299	-	

- 10.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: 해당없음
- 11.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: 해당없음

- Ⅱ.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(변경) 결정
- 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(변경없음)
 - 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(변경없음)

구분	구역명	위치	ı	면적(m²	•)	비율(%)	비고
下正		취수	기정	변경	변경후	미뀰(%)	미끄
기정	방배 삼익아파트 재건축 지구단위계획구역	서초구 방배동 1018-1번지 외 1필지	29,470.2	i	29,470.2	100.0	-

2.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(변경없음)

가. 용도지역 결정 조서(변경없음)

구분		면적(m²)		비율(%)	비고
丁 亚	기정	변경	변경후	미뀰(%)	이꼬
계	29,470.2	-	29,470.2	100.0	-
제3종일반주거지역	29,470.2	-	29,470.2	100.0	-

나. 기반시설 결정 조서(변경없음)

1) 도로(변경없음)

		규	모			연장			사용	최초	
구분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기능	(m)	기점	종점	형태	결정일	비고
기정	중로	3	Α	12	국지 도로	209.0	방배동 1036-5	방배동 992-6	일반 도로	1984. 09.25	대상지 북측
기정	중로	3	1	12 ~14	국지 도로	257.7	방배동 1036-5	방배동 1036-4	일반 도로	1984. 09.25	대상지 동측
기정	소로	1	В	10	국지 도로	250.0	방배동 1036-5	방배동 1036-5	일반 도로	1984. 09.25	대상지 서측
기정	소로	3	С	6	국지 도로	115.2	방배동 1036-4	방배동 1036-4	일반 도로	1984. 09.25	대상지 남측

2) 공공청사(변경없음)

7 H	, I A-III	니서이 조리	시성이 조리	기선이 조리	O. T.		면적(m²)		최초	ul ¬
구분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치	기정	변경	변경후	결정일	비고		
기정	공공청사	기타 공공 업무시설	방배동 1018-1	884.0	-	884.0	서고 제2017-226호 (2017.06.29.)	-		

- 공공청사 부지 조성 및 건축물 기부채납 계획
- 공공청사 연면적 1,692.0㎡(환산면적 242.8㎡)
- (※ 상기 내용은 최초결정일(2017.06.29., 서고 제2017-226호)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, 정비계획 결정 이후 「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」에 따라 부지면적 환산을 위한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은 건축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충족여부를 최종 확인)

■ 건축범위 조서(변경없음)

시설명	위치	건폐율	용적률	높이	비고
공공청사	방배동 1018-1번지 일대	50% 이하	250% 이하	3층 이하	제3종 일반주거지역

3.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(변경)

가.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(변경없음)

구분	가구	면적(m²)	비율(%)	비고
	소 계	26,676.2	90.5	-
기정	획지1	25,792.2	87.5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
	획지2	884.0	3.0	공공청사

나. 건축물의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

1)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(변경없음)

	구분	가구	용도	비고
기정	허용용도	획지1	·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	허 용용 도 외의
기정	허 용용 도	획지2	∘ 공공청사	용도는 불허

2) 건축물 개발밀도(변경)

가) 건폐율 계획(변경)

구분	지역		건폐율	비고
기정	7110 3 0141 7 717101	호 기 1	25.05% 이하	공동주택 및
변경	제3종일반주거지역	획지1	25.2% 이하	부대 복 리시설
기정	제3종일반주거지역	획지2	50.0% 이하	공공청사

■ 변경사유서

구분	위치	변경내용	변경사유
건폐율	방배동 1018-1번지 일대 (획지1)	전폐율 증가(증 0.15%)기정 25.05%→ 변경 25.2%	 건축 인허가시 협의의견(장애인 통행로 확폭 등) 반영에 따른 건폐율 증가

나) 용적률 계획(변경없음)

구분	가구		비고			
干正	7 +	기준	허용	상한	법적상한	미끄
기정	획지1	210% 이하	210% 이하	250% 이하	294.45% 이하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
기정	획지2	250% 이하				공공청사

■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사항 : 미적용

■ 상한용적률 완화 사항(변경없음)

구분	용적률	קום	
	공공시설 기부채납	소형주택 건설	미소
기정	40%	44.45%	총 84.45%

다) 높이 계획(변경없음)

구분	지역 높이기준		비고	
기정	제3종일반주거지역 획지1		80.5m 이하, 최고 28층 이하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
기정	제3종일반주거지역	획지2	3층 이하	공공청사

다.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(변경없음)

구분	적용위치	계획내용
건축한계선	 중로 3-A(폭12m)변 중로 3-1(폭12m~14m)변 소로 1-B(폭10m)변 소로 3-C(폭6m)변 	• 획지경계선으로 부터 3m 후퇴

라.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(변경없음)

1)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 조서(변경없음)

구분	적용위치	계획내용
공공보행통로	∘ 도면에 표기 - 명달로9길(동측) ~ 방배로4길(서측)	 폭 6m 동서방향 도로(명달로9길, 방배로4길)와 연계 할 수 있는 형태로 계획 단차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바닥 포장재료를 차별화 하여 인지도를 높이도록 계획 및 24시간 개방

2)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조서(변경없음)

구분	적용위치	계획내용		
차량진출입구	∘ 소로1-B(폭10m)변	· 서측 차량진출입구 : 주출입구		
	∘ 중로3-A(폭12m)변	· 북측 차량진출입구 : 부출입구		

3) 환경관리계획(변경없음)

	검토항목	목표기준	준수 여부	현황 및 검토결과	계획에의 반영사항	
자 연 환 경	1.생태면적율	30%	0	·건축유형에 따른 생태면적율 기준 : 공동주택(개발면적 660㎡이상) 30%이상 적용		
	2.녹지 네트워크	녹지평가 지표 I	0	·녹지면적Ⅲ, 녹지모양Ⅲ, 내부 연결성Ⅰ,외부연결성Ⅲ	・환경성검토 녹지평가지표 기준1 달성	
	3.지형변동	절성토비 율 20%미만	0	사업지구는 평탄지임부지조성시 지하굴착에 따른 사토량발생 예상	· 발생토량은 되메우기로 최대한 활용하고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재활용	
		지형변동비율 30%미만	0	· 부지조성시 지하굴착에 따른 경미한 지형변화 예상	• 평탄지형에 순응한 건축계획 수립	
	4.비오톱	3등급	0		·공개공지, 조경녹지 등 녹지공간 확보에 따른 긍정적 영향 예상	
생활	1.일조	연속 2시간 확보	Δ	· 일조피해 대상시설인 주거 시설이 존재함	· 본사업시행으로 인한 일조영향은 미미함	
	2.바람 및 미기후	바람길 확보	0	・매봉재산, 서리풀공원을 중심으로 ·서울시 주풍향 및 주변 7 서에서 동으로 형성된 바람길 변 바람길을 고려한 건축 화 미미 수립		
	3.에너지	에너지절약 계획 수립	0	・난방, 취사연료 사용량 증가	·청정연료 LNG 사용계획수립	
		신재생 에너지 사 용	0	·건물신축에 의한 에너지 사용량 증가	·태양광발전,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도입	
	4.경관	Skyline보전	0	· 공동주택 배치계획 및 층수 등이 변화함에 따라 스카이라인 변화 발생	· 과대한 층수제한,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 형성될 수 있는 건축계획 수립	
환 경		조망권 확보	0	· 건축물 입지에 따른 경관 변화 예상	·합리적 조경계획수립 및 녹지 공간 확보, 건물의 경관적 균형 유지 계획수립	
		가로녹시율 35%	0	· 사업지구 가로변을 따라 가로수 및 녹지 조성	· 가로녹시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가로변 녹지조성 및 조경수목 식재	
	5.휴식 및 여가공간	휴식·여가공간 최대확보	0	・단지내 주민들의 휴식공간 부족	· 소공원 조성 · 녹지공간 최대확보	
	6.보행 친화공간	보행자전용도로 계획수립	0	·주변 가로망을 따라 보행로 조성		
		자전거보관소	0	• 사업지구내 자전거 보관시설 없음	자전거보관소 설치	
추	1.폐기물	폐기물 처리	0	•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	·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처리계획 수립	
가	2.소 음· 진동	소음진동영향	0	· 공사시 소음·진동영향 · 운영시 도로에 의한 소음영향	· 공사시 저감대책수립 · 이중창등의 방음창 설치	

- 4)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결정조서(변경없음)
- 모든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. 다만,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.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등 관계 법령에 의한 의무임대주택 등은 세입자 주거 대책 및 도시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로 정하며, 서울시에 매각(처분)하여야 한다.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%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60㎡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설 하여야 한다.

■ 주택의 규모별 비율(정비계획)

건립규모	전체세대수	전체비 율 (%)	공공 임대주택 세대수	공공임대주택 비율(%)	
				전체세대수대비	전체비율
합계	707	100.0	86	12.2	100.0
40 m² 이하	-	-	-	-	-
40㎡초과~50㎡이하	106	15.0	86	81.1	100.0
50㎡초과~60㎡이하	106	15.0	-	-	-
60㎡초과~85㎡이하	344	48.6	-	-	-
85㎡초과	151	21.4	-	-	-

[※] 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조성되는 공공임대주택은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의거하여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에 의한 소형주택임

Ⅲ. 관련도면 : 붙임 참조

○ 첨부된 지형도면 등(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)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,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도서 참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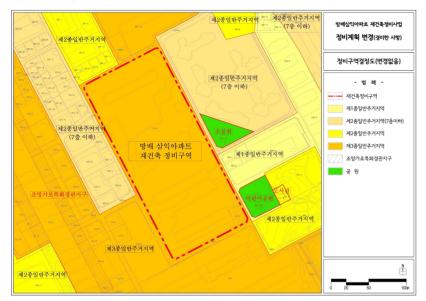
Ⅳ. 열람장소

- 관계도서는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초구청 재건축사업과(☎2155-7305)에 비치하고 있습니다.
 - ※ 고시문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(http://luris.mltm.go.kr)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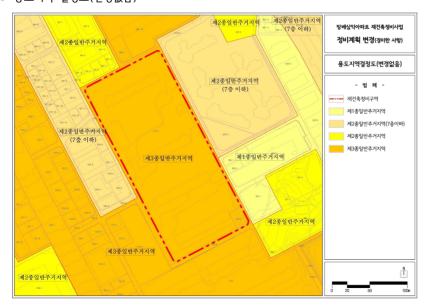
^{※ 1.}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(변경) 결정 내용 중 '법적상한용적률에 따른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'참고

[붙임]

○ 정비구역 결정도(변경없음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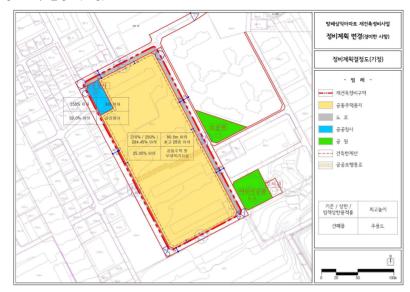
○ 용도지역 결정도(변경없음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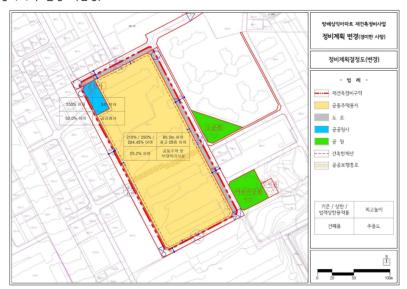
○ 도시계획시설 결정도(변경없음)



○ 정비계획 결정도(기정)



○ 정비계획 결정도(변경)



○ 지구단위계획 결정도(기정)



○ 지구단위계획 결정도(변경)

